

김영란法 10계명

3·5·10

① 기본 중 기본은

- '3·5·10만원' 법칙이다
- 공직자에게 식사·선물·경조사비 제공 땐 각각 3·5·10만원 이하로
- 위반 땐 과태료 부과, 공직자는 소속 기관까지 처벌 '양벌규정'

② 죽마고우라도 '직무관련성'

있으면 식사 3만원 이내로

- 김영란법에서는 '직무관련성' 관련해 친분관계 고려 안해줘
- 고교동창 사무관·기자·교사 만나도 한 명이 3만원 넘겨 대접 안돼

③ 애매할땐 무조건

'더치페이'하고 영수증챙겨야

- 누구를 만나든 자기 밥값 자기가 내면 문제 안돼
- 이해관계(인허가 등) 있는 공직자 만날 때는 3만원 식사도 불허

④ 결혼·장례 이외엔

경조사비 안된다

- 승진·돌잔치·생일 등 여타 경조사 때에는 경조사비 수수 불허
- 결혼·장례 때 10만원 넘는 경조사비 받으면 초과분 돌려줘야

⑤ 결혼식때 식사대접

3만원 넘어도 돼

- 결혼식·장례 때는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초과 식사는 허용

⑥ 식사, 선물 같이 대접할땐

합쳐서 5만원 이하로

- 식사비용은 3만원 이내로, 선물비용은 '5만원-식사비용'으로 제한

⑦ 처음 청탁은 거절, 두번째는 기관장에게 신고

- 1차 때는 부정청탁임을 알고 명확한 거절, 2차는 서면 신고해야
- 이를 어긴 공직자는 내부적으로 징계당할 수 있어

⑧ "입원, 검사 빨리받도록" 부탁 이젠 안돼

- 환자 보호자가 병원 지인에게 부탁하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
- 국공립, 사립 대학병원은 적용, 민간병원은 적용 안돼

⑨ 아이 담임 만날땐

교무실에서...공개적 민원은 괜찮아

- 상시적으로 학생 평가하는 교사에겐 커피 한 잔도 주면 안돼

⑩ 부정청탁 말만으로도 위법, 애매한 부탁 안꺼내야

- 청탁 성사 여부는 중요치 않아... 본인 위한 민원일 때는 처벌규정 없어